

26.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 9월 21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대구시 위원회 중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지양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 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조~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전반)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규홍)

□ 검토결과

- 2022년 8월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전체 199개로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설치하였음.
 - 그러나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나,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짐.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 다만 교육청 소관의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가 폐지되는 두 위원회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관 간 칸막이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고 심도깊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